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6. 7. 14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6. 7. 14
- 상정일자 : 2006. 7. 24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표 1>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 산			금회추경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합 계	219,250,987	193,652,400	185,243,097	8,409,303	25,598,587
일반회계	182,154,449	162,727,395	154,287,092	8,440,303	19,427,054
특별회계	37,096,538	30,925,005	30,956,005	-31,000	6,171,533
의료급여	41,394	42,270	42,270	-	-876
주차장	37,055,144	30,882,735	30,913,735	-31,000	6,172,409

※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 : 총 13.2%

- 일반회계 11.9
- 특별회계 20.0
 - 의료급여 -2.1
 - 주차장 20.0

4. 추정재원 규모

○ 일반회계 : 19,427,054천원

<표 2>

(단위 : 천원)

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427,054	15,990,906	2,000,000	1,436,148

○ 특별회계 : 6,171,533천원

<표 3>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의료급여특별회계	△ 876	-	△ 876
주차장특별회계	6,172,409	5,870,840	301,569

5. 세입 간주처리 내역

<표 4>

(단위 : 천원)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주차장)	
	회수	예산액	회수	예산액
8,409,303	9	8,440,303	2	-31,000

6. 세출예산

○ 일반회계 재원배분 현황

<표 5>

(단위 : 천원)

합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18	19,427,054	65	10,666,711	53	8,760,343

※ 재원 대비 투자사업비 비율 45.1%

○ 특별회계 재원배분 현황

<표 6>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의료급여특별회계	1	△ 876	1	△ 876	-	-
주차장특별회계	7	6,172,409	6	6,117,109	1	55,300

○ 일반회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표 7>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합 계	182,154,449	162,727,395	19,427,054	100
운 영 위 원 회	2,233,942	2,124,538	109,404	1.2
시민행정위원회	161,906,316	144,985,387	16,920,929	88.9
재무건설위원회	18,014,191	15,617,470	2,396,721	9.9

○ 특별회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표 8>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합 계	37,096,538	30,925,005	6,171,533
시민행정위원회(의료급여)	41,394	42,270	-876
재무건설위원회(주차장)	37,055,144	30,882,735	6,172,409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경상비>		-----	2건	242,382
- 2004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234,062
- 수방상황실 근무자 여비	<신규>	-----		8,320
<투자비>		-----	15건	2,310,610
- 당고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추가>	-----		30,000
- 꽃묘 구입	<추가>	-----		30,000
-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가>	-----		30,000
- 청진동 202번지 도로용지 미불보상	<추가>	-----		275,000
- 제설재(염화칼슘)	<추가>	-----		49,400
-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추가>	-----		103,210
- 이화동28-8~27-32간 도로개설공사<신규>		-----		450,000
- 삼청동 28-42 주변 도로개설공사 <신규>		-----		58,000
- 중앙지하차도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신규>		-----		105,000
- 삼청동 35번지 일대 난간정비공사 <신규>		-----		130,000
-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추가>		-----		200,000

-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계량유지보수	<추가>	-----	200,000
- 대학로문화지구 보안등 개량공사	<신규>	-----	200,000
-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신규>	-----	150,000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추가>	-----	300,000

7.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규모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192억 5,098만 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255억 9,858만 7천원이 증가(13.2%) 되었는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821억 5,44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4억 2,705만 4천원이 증가(11.9%)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0억 9,65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1억 7,153만 3천원이 증가(20.0%) 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876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1억 7,2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주처리는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4억 930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회 84억 4,030만 3천원이 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2회 -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추경재원 규모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규모는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94억 2,705만 4천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9억 9,090만 6천원, 조정교부금 20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3,614만 8천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비는 65건에 106억 6,671만 1천원이고, 투자사업비는 53건에 87

억 6,034만 3천원으로서 재원 대비 투자사업비 비율은 45.1%로 경상비 비율 54.9% 보다 재원 배분이 적은 이유는 호봉승급 등 인건비 부족분 법정필수경비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함으로써 경상비 보다 투자사업 부문에 재원이 적게 배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표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0억 1,419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3억 9,672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 1,821억 5,444만 9천원의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 7. 1 행정기구 및 직제 변경으로 인한 산업환경과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바, 각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38 쪽)

위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406만 2천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한 광장골목시장 외 3개소 (광장시장, 종로신진시장, 동대문 D동상가)의 환경개선 · 시설현대화 및 화장실개선사업에 필요한 시비 총 24억 8,420만원을 지원받아 22억 5,013만 8천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50 쪽)

위 사업비는 당초예산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은 그동안 관내 하수암거를 조사한 결과 준설할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어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50 쪽)

위 보수공사비는 당초예산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지역의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어 그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 당고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51 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당고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0,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바닥포장 및 기타 시설물정비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 지급조례 신설로 인한 신고포상금 (152 쪽)

위 신고포상금으로 5,000천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보면, 포상금은 1건당 500천원으로 규정되었으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그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2의 규정에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명 표기를 함에 있어 “지급조례 신설로 인한 신고포상금”은 잘못 표기되었다고 보며, 이를 “무등록중개업 등 신고포상금”으로 법령의 내용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

○ 청진동 202번지 도로용지 미불보상금 (154 쪽)

위 도로용지 미불보상금은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을 추정하여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2억 75,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바, 승소 가능성이 없는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금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154 쪽)

위 유지관리 자재비는 당초예산 37,10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1억 3,210천원이 계상된 것은 하반기에 보안등 신설 350등, 유지보수 2,400건 및 자동점멸기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재비가 부족되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 이화동 28-8~27-32 도로개설공사 (155 쪽)

위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로노인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 이화동 25-1번지 주변 일부분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사업을 상기 신축공사와 연계 실시하여 노인복지관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폭 6미터, 길이 35미터이고, 공사기간은 2006. 10부터 2007. 12까지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4억원, 공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중앙지하차도의 3개소 정밀안전진단 (155 쪽)

위 4개소(중앙지하 보차도, 동십자각 지하보도, 사직공원 지하보도, 신설동로타리 지하보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14년 내지 20년이상 경과된 도로기반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필요성이 있어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05. 7. 29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써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

쳐야 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3 회계연도 본 예산안 심의 시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을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종로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 반영토록 전액 삭감 조치된 바 있습니다.

○ 대학로 문화지구 보안등 개량공사 (155 쪽)

위 보안등 개량공사비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마로니에길, 낙산공원길, 동숭길 주변에 보안등 신설, 전선관 매설, 점멸기 신설, 케이블 포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된 것이나, 동 사업은 대학로문화지구 지장물지중화계획(시장방침 303호, 2005.6.2)추진과 관련된 공사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 받지 못하고 구비로 반영된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159 쪽)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배분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건에 61억 7,240만 9천원으로서 경상비는 6건 61억 1,710만 9천원이고, 투자사업비 1건 5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부문에 일시사업인부임 1억 3,44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종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26명에 대하여 근무수당이 편성되었으나, 2006. 7. 1자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이 감액조치된 것이며, 이와 관련 사업예산부문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로 1억 8,139만 6천원이 편성된 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신규채용된 계약직 10명과 정규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05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반납분 3억 15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혜화동 시범지구 그린파킹 사업추진(담장허물기사업)에 따라

55가구에 118면과 CCTV 10대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에서 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는데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9.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